

● 제330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건강기정 자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623)
검 토 보 고 서

2025. 4. 2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신동원 의원 발의 】

의안번호 2623

I. 조례안 개요

1. 발의자 및 제안경과

가. 발 의 자 : 신동원 의원 (찬성 28명)

나. 발 의 일 : 2025. 3. 31.

다. 회 부 일 : 2025. 4.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 담고 있어 조례의 명칭에 부합하는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지 못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변화하는 가족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가족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함(안 7조부터 제10조까지)
-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입법예고 (2025.4.5.~4.9.) 결과 : 의견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에서 명시된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변화하는 가족환경에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조문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음.

<조례안의 제명 및 조문 배열>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제8조(센터의 조직)
제2조(정의)	제9조(센터의 지원)
제3조(시장의 책무)	제10조(센터의 위탁운영)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제11조(민간단체 등 지원)
제5조(가족실태조사)	제12조(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 지원)	부 칙
제7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2 주요내용 검토

□ 제안취지와 필요성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중앙 및 시·도 건강가정위원회가

폐지되고 이를 반영하여 법(시행 2012. 3. 16.)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시행 2012. 7. 30.)에서 시·도 건강가정위원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조문내용을 삭제하였고, 현행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시행 2021. 7. 20.)에서는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 담고 있음.

<현행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조문 배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삭제 <u>제3조~제10조 삭제</u> (*사·도 건강가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3장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11조(설치 및 기능) 제12조(조직) 제13조(운영위원회) 제14조(센터에 대한 지원) 제15조(운영의 위탁) 제16조(지도·감독 등) 제4장 보칙 제1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

- 현행 조례의 제명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이지만 실제 조문 대부분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 담고 있어 조례 명칭과 부합하는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건강가정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시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1조 목적규정에서는 ‘법에서 조례에 위

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제한하여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현행 조례 제1조(목적)>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에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목적)에서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규정하여 서울특별시가 건강가정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u>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u> 목적으로 한다.

-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로 보여지며, 따라서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뿐만 아니라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자치사무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과 같이 목적규정을 보다 넓게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짐.

□ 가족실태조사(안 제5조)

- 안 제5조(가족실태조사)에서는 시장이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5조(목적)>

제5조(가족실태조사) ① 시장은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가족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법 제20조(가족실태조사)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서 가족실태조사에 관해 위임한 여성가족부령(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족실태조사 관련 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해 위임받은 여성가족부령에서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족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 했음에도 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가족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에서 ‘필요한 경우’로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음.

- 법에서 정한 실시주기보다 이를 위임받은 여성가족부령에서 축소하여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가족부령에 따라 시장의 가족실태조사 실시주기를 시장이 ‘필요한 경우’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됨.
-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르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에 위반된 명령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심사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가족실태조사에 관해 법률에서 위임받은 여성가족부령이 대법원의 심사를 통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이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이를 근거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 보긴 어려워 보임.

□ 건강가정 지원(안 제6조)

- 안 제6조(건강가정 지원)에서는 시장이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 유지·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안 제6조(목적)>

제6조(건강가정 지원) 시장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는 사회적 인식개선 및 교육

2.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지원 강화
4.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

- 서울시는 여성가족부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1~'25)에서는 '가족 다양성 인정'과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4개 영역에 대해 11개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정책 체계1)>

비전	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목표	가족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
영역별 과제	영역(4개)	정책과제(11개)
	1.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1-1. 가족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중앙부처 추진) 1-2. 가족다양성 인식과 가족구성원 인권 보호 1-3. 가정폭력 대응 강화 등 가족구성원 인권 보호
	2.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2-1.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적 기반 강화 2-2. 가족 특성을 고려한 자녀양육 여건 조성 2-3. 지역 중심 통합적 가족서비스 체계 구축
	3. 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3-1.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지원 확대 3-2.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3-3. 가족 돌봄 지원의 양적·질적 강화
	4.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	4-1. 남녀 모두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 보장 4-2. 성평등 돌봄 정착 및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1) 2025년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시행계획, 가족담당관-3665, 2025.3.4.

- 이에 안 제6조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수립한 건강가정시행계획에 따른 정책과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설치 및 기능)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정 교육·가정문제상담 및 가족생활문화운동 전개 2. 시 단위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한 욕구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3.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지원·평가 및 가정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제7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맞춤형 건강가정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연구 3. 자치구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4. 건강가정사업 홍보 및 정보 제공

- 여성가족부 ‘2025년 가족사업안내’에 따르면 광역 단위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기초 단위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주체별 역할을 구분하고 있으며, 광역 단위의 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내 센터간 연계 역할을 하고, 기초 단위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필요로 하는 1차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임.

<광역 및 기초 단위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	기초 건강가정지원센터
○ <u>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계</u> ○ 시·도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프로그램 <u>개발·보급</u>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지원 및 <u>관리</u>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역량강화 <u>교육</u> ○ 시·도 가족관련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u>구축·보급</u>	○ <u>지역사회 내 가족구성원을 위한 1차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u> ○ 지역단위 가족생활 교육·상담·문화·돌봄사업 <u>실시</u>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u>제공</u> ○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관련 정보<u>제공</u> ○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개발한 특성화사업 <u>수행</u>

- 이에 광역 단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에 맞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조례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안 제7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2항에 따른 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9

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안 제7조 제3항>

제7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③ 시장은 센터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각각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여성가족부가 별도 법률 개정없이 2014년도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기능을 통합·운영하였음²⁾.
- 서울시도 2021년도 5월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419)이 통과(2021.7.2.)됨에 따라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여성가족부는 2021년도 가족사업안내 지침 개정(21.10.13.)에 따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였음³⁾.

<센터별 설치근거>

센터명	설치근거
건강가정 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11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9조

2) 여성가족부 2025년 가족사업안내(I), p.72.

3)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3605 (2021. 10. 12.)

가족센터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	---------------

- 2014년도부터 가족센터가 법적인 근거없이 행정규칙인 여성가족부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가족센터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음.
- 최근 국회에서도 가족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등 10인, 2024.8.28. 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음.
- 해당 법률안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그동안의 가족센터가 법적인 근거없이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 통합설치·운영되고 있음을 비판하며, 지역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강제로 통폐합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된 바 있으며⁴⁾, 법률안 중 가족센터와 관련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의견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수 정 의 건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① ~ ⑥ (개정안과 같음)
제35조의2(가족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⁵⁾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423회-여성가족소위제1차(2025.3.5. 회의록)

- 법률안에서도 가족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센터의 통합 설치·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두고 있음.
- 또한 서울수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보 제4047호(2025. 2. 27.)에서 고시⁶⁾한 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에 따르면 중구에 위치한 가족센터(1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동작구에 위치한 가족센터(2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가족센터 관련 시립 사회복지시설 고시>

연번	담당 부서	시설명	시설유형	위치	주요기능
93	가족담당관	서울시가족센터(1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중구 소파로4길 6	건강가정 교육·상담, 프로그램 지원
94	다문화담당관	서울시가족센터(2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10 서울가족플라자B2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서비스 연계 등 지원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가족센터 설치·운영에 관해 조례에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해 보이며, 가족센터에 관한 근거를 담은 법률안(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법률안과 같이 개정안에서 센터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6) 고시번호 제2025-97호

- 다만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중앙부처는 소관부서가 5개로, 서울시는 7개로 나뉘어져 있어 가족센터를 총괄하는 부서가 부재하여 현장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가족센터 각 사업별 소관부서 현황 >

NO	사업명	중앙부처 (여성가족부)	서울시
1	가족센터 운영(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가족정책과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정주환경개선팀
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가족정책과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돌봄사업팀
3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족문화과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돌봄사업팀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과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정주환경개선팀
5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다문화가족과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다문화지원팀

- 따라서 가족센터로 센터를 통합·운영함에 있어 먼저 중앙부처 차원에서 일원화된 총괄부서가 지정되고 예산이 통합되어 교부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와 필요한 경우 인력 충원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위에서 언급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등 10인, 2024.8.28. 제안) 제35조의2 제2항에서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법률 시행⁷⁾ 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7) 참고로, 해당 법률안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규정에 따라 조례에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센터의 조직(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8조>

제8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에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은 센터장, 관련 공무원, 건강가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 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에 따라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받은 대통령령(「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필요한 조직 구성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해 보임.

- 또한 안 제8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12조제2항에서 ‘센터장은 비상근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제1항이 적용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센터장이 아닌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개정하여 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네 명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필요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에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은 센터장, 관련 공무원, 건강가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공무원, 건강가정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 집행기관 의견(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 소관부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지자체(장)의 위임사무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여 본 개정안에 대해 ‘원안동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3 종합 의견

- 현행 조례는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정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명시된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변화하는 가족환경에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입법취지가 인정된다 할 것임.